

## 【사건번호 2022-005】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데이터 사건

### 1. 개요

-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등록데이터
- 신청목적: 데이터 분석 및 정보서비스

### 2.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자동차종합정보 첨부형 API\*’의 제공항목에 ‘최초취득금액’ 데이터(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한다.)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 \* 국토교통부가 현재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제공중인 서비스로 이용자가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 175개 항목(차대번호 포함)을 제공함

### 3. 사실조사

#### 가. 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69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등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관련 데이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음
  -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10항)
- 2019년 7월 피신청인은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소유자 차량에 한하여,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자동차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종합정보 첨부형 API”를 개발하여 운영
  - \* 정보주체에게 본인인증 페이지를 호출한 후, 소유자 이름,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 진행
  - 해당 API는 별도의 이용약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해당 API는 자동차기본(32개), 제원(70개), 정비이력(16개), 성능점검(56개), 차대번호 등 총 175개 항목의 데이터를 제공가능하며, 이용자는 첨부형 API 이용 신청 시, 175개 항목 중 제공받기를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음

##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를 의미
- 이 사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 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공공데이터법 제4조 및 제17조제1항)
- 첨부형 API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도 이 사건 데이터의 비공개성 등에 대한 주장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데이터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하였음
- 한편,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가질 뿐,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
- 위원회는 OPEN API와 관련한 사건에서, 국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가공 등이 용이한 경우나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 공공데이터의 가공 등에 공공기관의 비용 또는 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위원회 조정사례 참조)

## 참고

## OPEN API 관련 조정사례

### □ OPEN API가 개발되어 있지 않음에도 신규 개발 및 제공 신청한 경우

- 신청인 요청대로 개발하여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공거부가 타당함
  - 2014-013사건(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2015-009사건(대법원 경매정보), 2016-009사건(국세청 휴·폐업정보), 2018-004사건(한국철도공사 화물열차 운행정보), 2019-008사건(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치법규)

### □ OPEN API의 수정이 용이한 경우

- 기술적 검토 결과 API수정이 용이하고, 국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정·제공하도록 함
  - 2016-015사건(행정안전부 봉사참여정보 API): 주소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예: 경북, 경상북도 등) 신청인이 표준주소코드를 추가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검토 결과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수정이 용이하고 해당 OPEN API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정·제공하도록 조정(사전)
  - 2017-001사건(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API): 신청인이 원하는 데이터(통신판매사업자 전자우편주소)가 피신청인이 개방중인 파일데이터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API의 제공데이터에는 제외되었던 사안에서, 해당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API를 수정하도록 조정(사전)
  - 2019-007사건(한국전력공사 분산형 전원 전신주 조회 API): 신청인이 원하는 검색기능(특정 지역을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분산전원 연계정보를 조회)이 피신청인 홈페이지에는 구현되어 있으나, API로는 구현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에서, 피신청인 검토결과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OPEN API 검색조건 수정이 용이하여 수정·제공하도록 조정(사전)
    - ※ 단, 데이터 재검증을 위해 합의일로부터 2개월 후 제공하기로 함
  - 2019-014사건(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찾기 API): 검진기관 찾기 API의 응답값에 검진기관 구분 값(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을 추가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미 제공하는 다른 API를 함께 이용하면 신청인이 원하는 기능이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검진기관 찾기 API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정·제공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함(조정성립)

### □ OPEN API 수정이 용이하지 않고 수정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가공의무가 없음을 확인함
  - 2016-026사건(한국연구재단 학술참고문헌 API):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중인 논문검색 API와 참고문헌 API를 연계(논문검색 API에서 논문을 검색하면 논문검색 결

과와 함께 각 논문이 인용하고 있는 참고문헌 목록도 모두 출력)하도록 API수정을 요청함. 피신청인 소명결과 논문DB와 참고문헌 DB가 별도로 존재하고, 각 DB의 구축시기가 20년 가까이 상이하며 DB의 용량이 방대하여 연계가 쉽지 않다는 점, 신청인 요청대로 수정 시 접속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서버 과부하가 우려되며 현재 피신청인의 서버 용량 대비 트래픽이 많아 이미 서비스 중단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개선점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피신청인 시스템의 구조 및 기술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조정성립)

□ OPEN API 수정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단 해당 비용은 공공데이터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해당 비용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2018-025사건(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정보 API): 피신청인은 기존 API에 데이터 4종을 추가 제공하도록 API를 수정·개발 및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440만원을 제출, 신청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합의함(조정성립)
- 신청 데이터에 범용성이 있어 추후 다른 이용자도 해당 데이터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국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2020-012사건(국토교통부 첨부형 API):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제35조제1항), 향후 다른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익에 관한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행안부 공공데이터개방사업으로 비용을 지원하였음)

- 이 사건의 경우, OPEN API에서 호출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것에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담당자에 따르면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API 프로그램 수정만이 아니라 데이터 개방 DB의 변경이나 그 외 수반되는 작업들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관련 진술을 청취한 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4. 조정내용

### 가.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자동차종합정보 첨부형 API'의 제공항목에 추가하여 제공한다.
- 제공시기는 피신청인이 제공항목 추가를 위한 API 개발예산을 확보한 이후로 하되,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공공데이터법 제3조제1항),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공공데이터법 제24조제2항).
- 이 사건 관련 법령, 당사자 제출자료 및 진술, 기타 사실조사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며 해당 데이터 이용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제공 중인 '자동차종합정보 첨부형 API'에 이 사건 데이터를 추가하여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이 사건 데이터를 OPEN API 서비스 항목에 추가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개발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피신청인은 관련 예산이 확보된 이후 이 사건 데이터 제공을 위한 개발을 추진하되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권고한다.

## 5. 조정결과

- 위와 같은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성립